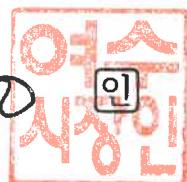
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섬 투어
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 2023.12.29



여수시 조례 제2033호

붙임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섬” 이란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.
2. “섬 가꾸기”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,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섬 투어”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,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. 다만,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섬 투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
2.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방안
3.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)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
 2. 교육,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
 3. 섬 관련 홍보 사업
 4.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
 5.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
 6.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
 7.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2.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
3.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

4. 섬 투어 코스 인증·지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제8조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여수시의회 의원
 2. 해양·문화·예술·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과장
 3.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4.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 5.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
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기능은 「여수시관광진흥조례」에 규정된 「여수시관광진흥위원회」가 대신할 수 있다.

- 제9조(운영)**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